

제 891 호
1982. 2.17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기획수
권장 : 공보관이름무
전화 : 72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소
전화 : 725-6096

시보

차 례

◎ 조	해	
제 1493 호 :	서울특별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	3
제 1609 호 :	서울특별시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	5
◎ 고	시	
제 65 호 :	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	7
제 67 호 :	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	7
제 68 호 :	도시계획사업(신정2동-왕산간도로개설)실시계획인가	8
제 69 호 :	도시계획사업(금육여중천입로개설)실시계획인가	10
제 70 호 :	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지적승인	11
제 71 호 :	서소문구역제3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	12
제 72 호 :	도시계획미관지구지적승인	12
제 73 호 :	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및변경	13
제 74 호 :	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지적승인	14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211. 서울특별시

제 76 호 :	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지적승인	14
제 75 호 :	도심구역제 3 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	16

◎ 공 고

제 71 호 :	도로공사계획	16
제 74 호 :	열사용기자재제조업체행정처분	18
제 75 호 :	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	19
제 76 호 :	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	19
제 77 호 :	분노특별수거지역외제외 (비수거) 지역공고	20
제 78 호 :	독산동배수지시설공사실시계획공람공고	20
제 79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22
제 80 호 :	관인개각사용및 폐기승인공고	24
제 81 호 :	KS 표시허가취소 처분공고	24
제 82 호 :	도시계획사업 (트로하수도) 실시계획공람공고	25
제 84 호 :	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	26
제 12 호 (관악구) :	관인개각사용공고	27

◎ 사 령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년 2월 18일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493 호

서울특별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

서울특별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행정법규상담실(이하 "상담실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설치) 상담실은 법무담당관실에 둔다.

제 3 조 (상담사항)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.

- 1. 시, 구, 동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의사항 및 권리주장과

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행정법규의 상담

- 2. 시민의 생활 및 권리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법률 상담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담에 응할 수 있다.

제 4 조 (운영) ① 상담실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법무담당관 책임하에 운영한다.

② 상담대상은 민간인, 각급기관 및 공무원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 5 조 (상담방법) ① 상담은 면담, 서면 또는 전화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② 상담시간은 평일에는 10:00 - 17:00 까지, 토요일은 12:00 까지로 한다.

제 6 조 (상담관) ① 상담관은 법무담당관실 파견장이 되며,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4급공무원 3명의 상담요원을 배치한다.

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정형자, 법과대학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한다.

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하거나, 구·동 또는 산하기관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
제 7 조 (일석) 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실과의 담당자

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,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상담처리) ①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연구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.

②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등 소상히 회신하고,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.

③전화문의는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.

④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관련실과 및 기관에 통지하여 시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 9 조 (시정조치) ①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지시한다.

②지시를 받은 구청장, 동장 및 산하기관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자문) ①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교문번호사의 자문을 받는다.

②법적 질차 또는 요식행위등

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사법서사, 행정서사, 세무사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운영위원회) 상담실과 관제실과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며,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12 조 (기록유지)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상담접수 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.

제 13 조 (실비변상)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문교부장관과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·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"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년 2월 16일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구분서 ㉔

○ 서울특별시 조례 제 1609 호

서울특별시 중·고등학교 특별
장학생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 중·고등학교 특별장
학생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
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교육법
제 1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
특별시 관내중학교 또는 고등학
교의 취학대상자중 특출한 재질
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
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
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
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
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특별장학생의 요건) 이
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
있는 자(이하 "특별장학생"이
라 한다)는 중학교 또는 고등
학교의 취학 대상자중 학비부담
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
정여하며, 품행이 단정한자로서
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국민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
적이 극히 우수한자(중학교

제 1학년 학생에 한한다)

2. 중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
또는 고등학교 선발고사 성적
이 극히 우수한자(고등학교
제 1학년 학생에 한한다)

3. 자연과학, 예능, 체육등에 특
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
자

4.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
인정되는자

제 3 조 (특별장학생의 정수) 특별
장학생의 정수는 중학교 및 고
등학교 학생수의 100분의 1의
범위안에서 매년 재정사정을 감
안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
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
다)이 정한다.

제 4 조 (특별장학생의 선정) ①중
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장은
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별장
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
할 수 있다. 다만, 중학교는
교육구청의 특별장학생 심의위원
회를 경유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제 1항의 구성에 의
하여 추천받은 후보자중에서 특
별장학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

거쳐 매학년도 개시 1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.

제 5 조 (장학금 지급) ①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, 수업료, 육성회비, 자율적경비, 실험실습비 기타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서, 학용품, 교복, 교모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6 조 (지급기간등) ①특별장학생에게는 제 7 조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학교를 졸업할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②교육감은 제 5 조 제 2 항의 장학금을 매학기초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한다.

제 7 조 (지급증서) ①특별장학생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
- 1.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때
- 2.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때
- 3. 연간 출석율이 90% 미달한때
- 4. 다른 장학금을 받게된때
- 5. 기타 제 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된때

②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길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소요재원)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은 매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

별회계 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)

①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 (이하 "시위원회"라 한다)를 두고, 각교육구청장 소속하에 각 교육구청별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 (이하 "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시위원회와 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③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이 되고,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④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해당 교육구청 학무과장이 되고,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해당교육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
⑥위원회에 간사를 둔다.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10 조 (시행규칙) 특별장학생의 관리, 장학금의 지급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 칙 (1982. 2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5 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1 호 (82.1.19) 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

- 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(81.12.31)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2.12

서울특별시

가. 도시계획시설(시장)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장명칭	위치	대지면적
신설	소매시장	신도림시장	영등포구대림동 909-2 일대	5,504㎡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7 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1 호 (82.1.19) 로 시설결정 고시된 성동구 관내 마장동 480-5 호 (시장결정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(81.12.31) 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

고시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82.2.12

서울특별시

가. 도시계획시설(시장)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성동구마장동 480-5	1,861 (563 평)	

나. 결정도면 : 별첨 (생략)
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68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사업 (신정 2 동 - 칼산간 도로개설) 실시계획인가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10 호 (75. 12.19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(신정 2 동 - 칼산간 도로개설) 을 서울특별시공고 제 40 호 (82.1.28-82-2,10) 로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에 이의가 없기에</p> <p>2.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25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이를 인가</p>	<p>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2.2.15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강서구 신정동 164 의 4 - 201 의 3 2)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신정 2 동 - 칼산간도로개설) 실시계획 3) 사업의 규모 (면적) : 4,182㎡ 4) 사업의 시행자 : 강서구청 5)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: 82.2-82.10 6)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권리명세 : 별첨 7) 허가내용 : 별첨인가도서 (생략)
--	---

신정 2 동 - 칼산간 도로개설공사보상토지조사

연번	토지의 표시	지목	지적 (㎡)	소유자		비고
				주소	성명	
1	신정동 164번지 4	대지	510	상도동 159-78	문정옥	-18(118)
2	• 170번지 33	전	473	신정동 188	문용환외7	-36(150)
3	• 164번지 17	대지	30	상도동 159-78	문정옥	-10(43)
4	• 168번지 23	도로	35	종로구제동 130	경숙외외1	-17(269)
5	• 169번지 2	전	212	신정동 180	문기춘	
6	• 170번지 35	•	5	• 168	문용환외7	
7	• 207-21	•	4	• 163	임옥순	-1(1038)
8	• 171-56	대지	2	종로구연지동 136-46	재단법인 대한예수 교장교회 서울노회 유지재단	-15(77)

연번	토지의 표시	지목	지적 (㎡)	소유자		비고
				주소	성명	
9	신정동 171-49	대지	6	신정동 171-27	김승호	
10	• 171-46	•	1	당산동 2가 30	안만수	
11	• 171-7	•	4	신정동 171-21	김대운	
12	• 207-7	전	865	• 163	임복순	-20(59)
13	• 171-55	대지	5	• 171-24	김원식	-52(12)
14	• 171-54	•	5	• 171-33	한성남	-51(55)
15	• 171-53	전	8	• 산 78-2	김기영	-44(81)
16	• 168-21	대지	18	• 산 78-2	권석구	
17	• 173-105	•	4	• 173	박승학	
18	• 173-103	•	4	교척동 52	이정용	
19	• 173-104	전	5	신정동 173	박한근	
20	• 207-15	•	80	• 163	임복순	
21	• 207-16	대지	36	• 169의 39	이상영	
22	• 207-17	•	51	• 207-5	이한구	
23	• 207-18	•	40	•	정종석	
24	• 174-17	전	29	영등포동 2가 233	이복동	-5(132)
25	• 208-25	대지	118	신정동 208-10	정병석	
26	• 208-17	전	30	• 산 77	서정기	
27	• 208-26	대지	32	수유동 253	최재국	
28	• 171-19	•	99	신정동 171-19	권수덕	
29	• 175-35	전	3	만리동 2가 134-5	유리공	-10(149)
30	• 175-34	도로	2	신창동 48	김한준	-32(44)
31	• 175-33	대지	22	•	김할순	-6(365)
32	• 175-18	전	33	만리동 2가 134-5	윤래용	
33	• 208-27	대지	40	신정동 208-27	송영웅	
34	• 208-24	도로	24	• 208-14	박봉배	
35	• 208-28	대지	8	• 산 77	서정기	
36	• 203-15	전	7	• 208-15	이상문	
37	• 203-14	대지	9	• 193	윤권영	

연번	토지의 표시	지목	지적 (㎡)	소유자		비고
				주소	성명	
38	신정동 203-16	대지	4	신정동 193	윤권명	
39	" 203-11	도로	2	" 산 78-2	김준석	
40	" 203-17	대지	1	" 193	윤권명	
41	" 202-51	전	123	신도림동 428	권혁중	-54(73)
42	" 202-47	"	554	구로동 570	박용태	-53(55)
43	" 203-10	"	175	신정동 193	윤건형	
44	" 204-4	"	152	" 197	박권섭	
45	" 201-8	대지	24	" 201-4	신명실업(주)	
46	" 201-2	구거	3	" 180	문순여	
47	" 203-19	"	53	목동 264-3	양동농기 개량조합	-18(1006)
48	" 204-7	"	241	"	"	-6(878)
			4,182			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69 호

도시계획사업 (금육여중진입로
개설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호 (74.1.14)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(금육여중진입로개설)을 서울특별시공고 제 39호 (82.1.28-82.2.10)로 서류공탁 및 의견정취에 이의가 없기에
2.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25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호 (79.12.10)에 의거 이를 인가하

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2.2.15
서울특별시장

- 1)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강서구 신정동 773의 18-산 115의 4
- 2)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금육여중진입로개설) 실시계획
- 3) 사업의 규모 (면적) : 3,355㎡
- 4) 사업의 시행자 : 강서구청
- 5)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: 82.3-82.10
- 6)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, 권리명세 : 별첨
- 7) 허가내용 : 별첨인가도서 (생략)

[금육여중진입로개설공사] 보상토지조서						
연번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	비고
				주소	성명	
1	산정동 734-5	권	739	동자동 19-31	정금순	-8(42)
2	" 733-22	답	36	"	"	-5(3,337)
3	" -23	"	2	"	"	-5(3,337)
4	" -16	"	812	신길동 209	김정길	-20(260)
5	" -21	"	2	동자동 12-31	정금순	-3(2,547)
6	" -2	대지	84	체부동 163-3	박용식	가분할권적입
7	" -13	"	214	"	박용무	
8	" -18	"	177	내수동 201-8	박용직	
9	" 산 115-58	임야	1,289	사직동 262-11	황병조	산 115-4(66,365) -57(9,392)
계			3,355	(1,015 명)		

<p>○ 서울특별시교시제 70 호</p> <p>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지적승인</p> <p>1. 건설부교시제 481 호 (81.12.24) 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된 지역에 대하여</p> <p>○ 지적승인조서</p>	<p>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제 8 조 8 항 및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교시제 463 호(79.12.10)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1982. 2. 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

실시계획사업명	위치	면적
택지개발사업	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, 일원동 수서동 일대	2,136,615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71 호

서소문구역제 3 지구재개발
사업시행인가변경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18 호(81.6.13)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된 서소문구역 제 3 지구가 동고시 제 11 호(82.1.3)로 사업계획 변경결정됨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및 동시행령 제 7 조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 동법제 16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.

1982. 2. 17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의 명칭 : 서소문구역 제 3 지구 재개발사업
- 나. 시행구역 : 중구태평로 2 가 190 의 146 필지
- 다. 시행면적 : 11,572 ㎡
 - 대지면적 : 8,856.3 ㎡
 - 공공시설 : 2,715.7 ㎡
- 라. 건축규모 및 용도는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로 확정한다.

마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중구태평로 2 가 250

바. 시행기간 : 81.6.13-85.6.30

사. 시행자의 주소, 성명 : 중구태평로 2 가 250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(대표이사 고상겸)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(인가서와 동일)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72 호

도시계획미관지구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98 호(80.3.18)로 결정된 도시계획 미관지구를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521 호(81.12.31)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2. 17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 미관지구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종 별	연 장	면 적	위 치	비 고
기정	4	6,300	161,200	오류동-시흥광장	
변경	3	2,200	88,000	안양교-구로 인터체인지	양측 20
기정	4	4,700	136,000	문래동 1 가 -오류동	
변경	3	4,700	188,000	문래동 1 가 -오류동	양측 20

○ 벌칙 도면표시과 같음 : 도면 생략

○서울특별시 고시 제 73 호

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및변경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물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 (81.12.31)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하고 이를

고시한다.

2. 관계 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82. 2. 18.

서울특별시 장

○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 조서

구분	종별	연장(㎡)	면적(㎡)	위 치	비 고
신설	1	860	43,000	의주로 - 독립문	양측 25 미터
"	2	3,800	144,000	북변동 - 갈현동	양측 20 미터
"	2	470	18,800	문화촌 유진상가 주변	양측 20 미터
"	4	3,280	98,400	독립문 - 은평구교	양측 15 미터
"	4	1,650	49,500	성북동 35 - 성북동 272 (서북로)	"
"	4	2,200	64,000	석관동 332 - 번동 98 (장척로)	"
기정	4	4,000	120,000	수유동 679 - 미아동 구제간 (삼양로)	"
변경	4	4,820	144,000	수유동 679 - 길음동 1077 (삼양로)	"
기정	2	9,000	216,000	원남동 - 우이동 (미아로)	양측 12 미터
변경	2	9,000	295,200	" "	
				(원남동-길음동21(4950구간확장)	양측 20 미터
기정	2	1,400	33,600	쌍림동 - 연건동	양측 12 미터
변경	2	1,400	42,400	쌍림동 - 연건동 (550미터구간확장)	양측 20 미터
기정	4	1,000	24,000	혜화동 - 동송동	양측 12 미터
변경	2	950	38,000	혜화동 90 - 연건동 176	양측 20 미터
기정	4	2,250	54,000	옥수동 - 보광동	양측 12 미터
변경	4	1,800	43,200	보광동 - 옥수동 43	"
				(450 미터 구간폐지)	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.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74 호

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 정류장) 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29 호(82.1.23) 로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신설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법제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 (82.12.31)

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 승인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2. 18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지적 승인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규 모	비 고
신설	여객자동차정류장	강서구신원동 672	1,457㎡	삼아운수(주)
"	"	" 밤화동 526-17의 1	3,034	김포교통(주)

나. 지적승인도면 2부 (도면생략)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76 호

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지적승인

- 1. 건설부고시제 53 호 (80.2.22) 와 서울시고시제 287 호 (81.7.30) 와 서울시고시제 46 호 (82.2.3) 및 건설부고시제 203 호 (81.6.12) 로 결정 및 일부 변경결정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을 도시계

획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521 호 (81.12.31) 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2. 18

서울특별시장

○ 고속철도 (본선) 지적승인 조서				
구 분	시 선 명	규모	위 치	비 고
지적승인	고속철도 (지하철 3호선 본선)	L=33.5km	벽계 - 삼송리 - 구마밭 - 불광동 - 용암동 - 흥계동 - 독립문 - 사직공원 - 중앙철 - 안국동 - 비원 - 종로 3가 - 퇴계로 3가 - 장충체육관 - 금호동 - 옥수동 - 압구정동 - 신사동 - 고속버스터미널 - 교대앞 - 양계동	9,3965 km 금회지적승인 기지적승인 19,441 km
지적승인	고속철도 (지하철 4호선 본선)	L=35.2km	상계동 - 쌍문동 - 수유동 - 미아삼거리 - 길음동 - 삼선교 - 석화동 - 이화동 - 서울운동장 - 퇴계로 - 회현동 - 서울역 - 삼각지 - 용산 - 이촌동 - 동작동 - 사당동 - 과천 (문원리)	11,4815 km 금회지적승인 기지적승인 20,0365 km
○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
○ 고속철도 (정차장) 지적승인 조서				
○ 지하철 3호선				
정 차 장 명	면 적 (㎡)		위 치	
충무로 4가 정차장	4,510		편동 2가 17-3 일대	
○ 지하철 4호선				
정 차 장 명	면 적 (㎡)		위 치	
길 음 정 차 장	5,900		길음동 877-66 일대	
종 로 6 가 정 차 장	5,600		종로 6가 64 일대	
서울운동장 정차장	6,100		율지로 7가 120 일대	
○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5 호

도염구역제 3지구재개발사업
관리처분계획인가

서울특별시고시 제 258 호 (80.7.14) 로 시행인가된 도염제 3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.

1982.2.18

서울특별시장

1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도염구역제 3 지구 재개발사업
2. 시행구역 및 면적
 - 시행구역 : 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 1 가 58-7 번지의 23 필지
 - 시행면적 : 2,446.4 ㎡
3. 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
 - 명 칭 : 도염제 3 지구 재개발조합
 - 사무소소재지 : 종로구신문로 1 가 24 번지
4.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의 내역
 - 토 지 : 2,446.4 ㎡
 - 건축부지 (대지) : 1,788.2 ㎡
 - 도로 : 658.2 ㎡
 - 건축물
 - 구 조 : 철근콘크리트
 - 층 수 : 지상 10, 지하 4

건축면적 : 784.9 ㎡

연 면 적 : 12,877.99 ㎡

용 도 : 업무시설,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

5. 분양대상 종전토지 및 건축물
가. 토지 : 종로구신문로 1 가 58-7,

동소 58-28, 동소 58-

20, 동소 58-27, 동소

58-19, 동소 58-5, 동

소 58-29, 동소 58, 종

로구당주동 131, 동소

131-1, 동소 132 동

소 132-1, 동소 135-2,

동소 135-3, 동소 135-1

동소 135-4, 동소 139,

동소 140, 동소 141,

동소 142-1, 동소 142-

2, 동소 143-2, 동소

129-1, 동소 40-1

나. 건축물 : 해당사항 없음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1 호

도로공사계획

1. 도로법시행령 제 24 조 및 도로법시행규칙 17 조에 의거 도로공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로목과에 비치 열람케한다.

가. 도로공사 계획 조서				
노선명	공사구간	공사명	시행자	공사기간
서울특별시	봉천본동 908-1	봉천본동 908-1 포장공사	관악구청	81.2.20-5.30
	봉천 1동 728-72, 97	봉천 1동 728-72, 97	"	"
	봉천 4동 1550-1	봉천 4동 1558-1	"	"
	봉천 6동 1690	봉천 6동 1690	"	"
	봉천 7동 1605-9	봉천 7동 1605-9	"	"
	봉천 8동 1524-16	봉천 8동 1524-16	"	"
	봉천 9동 635-326간	봉천 9동 635-326간	"	"
	봉천 10동 891, 38.41	봉천 10동 891-38, 41	"	"
	신림 1동 190부력 18간	신림 1동 190부력 18 포장공사	"	"
	신림 2동 110	신림 2동 110 포장공사	"	"
	신림 5동 685-184, 20간	신림 5동 685-184 포장공사	"	"
	신림 8동 572-2	신림 8동 572-2 포장공사	"	"
	신림 9동 246-53	신림 9동 246-53	"	"
	남현동 1069, 14, 1069-24	남현동 1069-14, 1069-24	"	"
	신림본동 409-180, 307간	신림본동 409-180 주변하수도	"	"
	신림 3동 661-9, 17간	신림 3동 661-9 주변하수도	"	"
	신림 4동 498-6, 54간	신림 4동 498-6 주변보도부력포설공사	"	"
	신림 7동 685-184, 20	신림 7동 685-184 주변도로부력포설공사	"	"
	신림 4동 1465번지간	신림 4동 1465번지간하수도공사	"	"
	신림 4동 - 8동간	신림 4동 - 8동간포장공사	"	81.2.25-81.11.30
	봉천 2동 - 9동간산복도로	영세민밀집지역산복도로포장공사	"	81.3.1-11.30
	봉천본동 903-22간	봉천본동 903-22간하수도	"	81.2.20-5.30
	봉천 3동산 81번지	봉천 3동산 91번지하수포장공사	"	"
	봉천 7동 1064-33, 1061-25	봉천 7동 1064 주변하수포장공사	"	"

노선명	공사구간	공사명	시행자	공사기간
	봉천 3동산 101번지	봉천 9동산 101번지 은천로 하수도포장공사	관악구청	82.2.20 - 5.30
	봉천 10동 890-1, 890-10간	봉천 10동 890 주변 하수도포장공사	"	"
	신림 10동 304 주변	신림 10동 304 주변 하수도	"	"
	신림 11동사무소 진입로	신림 11동사무소 진입로 하수도	"	"
	성보학원 진입로	성보학원 진입로 아스콘오비레이	"	"
	신림중학교 진입로	신림중학교 진입로	"	"
	남부순환도로 - 신림본동사무소간	남부순환도로 - 신림본동사무소간 포장공사	"	"
	남부순환도로까치교개	남부순환도로까치교개 용벽위 정비공사	"	"

(도면생략)

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
나 본 구간내 지하매설물(전화, 전
기, 상하수도, 도시가스) 등 유관사업은
시행하고자 하는자는 본 공사기간중에
시행토록 하시게 바랍니다.

1982.2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74 호

열사용기자재제조업체행정처분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, 제 23조 제
4항의 규정에 의거 열사용기자재
제조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
정처분하얏기 동법시행규칙 제 17조
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2.2

서울특별시장

허가번호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품목	위반내용	처분내용	적용법조
75	동진건설 공업사	유명재	개봉동 353-9	1. 구명탄 용온수보 일러(강 판)	미형식승인 제품제조판 매	세산중지 82.2.20 - 82.5.20 (3개월)	에너지이 용합리화 법제 23조 제 4항

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75 호

특정열사용기자제시공업소
행정처분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2 조 제 1 항
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 30 조

제 1 항 4 호에 의거 특정열사용 기자제시공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(지정취소) 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 17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2.2.
서울특별시장

지정번호	업소명	대표자	소재지	위반사항	처분내용	적용법조
4 호	오인기업(주)	김재호	독산동 610-7	신고의무 위반	지정취소	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 조
30 호	대광설비공업사	박충광	구로동 496-17	"	"	제 30 조
60 호	두원설비공사	이형주	독산동 900-17	"	"	제 1 항 4 호

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76 호

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

- 영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남부순환도로 원입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-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3.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2.2.15

서울특별시장

(환지계획변경내역)

- 가. 사업명 : 영동1지구 구획정리사업
- 나. 변경면적 : 종전면적 20,765㎡ (9,443 명)
- 다. 변경위치 : 강남구 서소동 738-6호 일대
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77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분노특별수거지역의제외 (비수거) 지역공고</p> <p>오물침소법 제 3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특별침소지역에서</p>	<p>제외 (비수거) 되는 분노 비수거지 역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2.2.15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 장</p>
--	--

구 별	동 명	제 외 지 역	통 명
강 남	일 원 동	전 지 역	
	내 곡 동	일부지역 (18-1)	6 통
	세 곡 동	" (12-6)	7, 8, 9, 10, 11, 12 통
	도 곡 동	" (36-5)	30, 33, 34, 35, 36 통
	대치 2 동	" (31-1)	24 통
강 서	파 해 동	전 지 역	
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78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독산동배수지시설공사실시계획 공람공고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0 호 (82.1.19) 로 지적승인, 고시된 구로구 독산동 산 10 의 2 의 6 필지에 독산동 배수지를 신설키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사 4 부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2.2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 장</p>	<p>가. 사업시행위치 : 구로구 독산동 산 10 의 2 의 6 필지</p> <p>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수도시설) 독산동 배수지시설공사</p> <p>다. 사업규모 및 면적 : 29,000 ㎡ Q = 22,000 ㎡ 배수지신설</p> <p>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종합건설본부장)</p> <p>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</p> <p>1) 착수에정일 : 사업실시계획인가 즉시</p> <p>2) 준공예정일 : 1982.11.30</p>
--	--

<p>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: 생략</p> <p>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 에 의한 관제안의 주소, 성명 : 생략</p>	<p>아. 공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 일간</p> <p>자. 기타사항: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사 4 부 에 제출 또는 문의 하기 바란다.</p>
---	--

독산동배수지부지토지조서

순 위	소재지	분할전토지			분할후(수용대상)토지			소유자		비고
		지번	지목	지적	지번	지목	지적	주소	성명	
1	구로구독산동	산 13-2	임야	16,694	산 13-3	임야	11,218	동작구상도동 164-8	양용석 외 13인	
2	"	산 12-2	"	12,198	산 12-3	"	3,260	경기도화성군 남면남양리 1225	정희준	
3	"	산 10-1	"	18,645	산 10-3	"	5,798	종로구무악동 8-5	이백근	
4	"	산 10-2	"	2,083	산 10-2	"	2,058	"	"	
5	"	"	"	"	산 10-4	"	37	"	"	
6	"	산 89-5	"	1,388	산 89-10	"	297	성동구중곡동 149-56	김명금 외 2인	
7	"	산 89-7	"	14,099	산 89-11	"	6,701	중구남대문로 1가 14	주식회사 조흥은행	
8	"	산 89-2	"	9 단 4-무모				국		미등기
계							29,369			

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79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
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198호 (71.4.7) 및 서울시고시 제 182호 (73.11.26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사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 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공고한다.
 2.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 3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.
- 가. 공람장소: 마포구청 토목과 및
건설관리과

나. 공람기간: 1982.2.17-3.2
(14일간)

1982.2.16

서울특별시

공 램 개 요

1.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
 - 가. 사업장위치
 - 성산동 96-10~135-30
 - " 134-122~134-59
 - " 127-1~중동 355
 - 나. 사업의 종류와 명칭: 성사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
 - 다. 사업의 규모: 1) 폭: 7~10m
2) 연장: 689m
 - 라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
 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: 1982.2-1982.7
 - 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: 별항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: 별항

보 지 조 서

번호	지 번	지목	지적	등급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1	성산동 134-147	대	50㎡	72	성산동 134-63	김우곤
2	-150	"	32"	72	휘경동 295-25	유영애
3	-151	"	13"	72	아현동 638-1	조태현
4	-154	"	4"	72	성산동 134-70	정계창

번호	지 번	지 목	지 적	등급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5	성산동 134-148	대	17㎡	72	충북청주시서문동 33-13	송종순
6	" -149	"	36	72	성산동 134-65	최창근
7	" -152	"	55	72	노고산동 33-5	김정자
8	" -153	"	75	72	성산동 134-50	이호범
9	" -155	"	138	72	외정부시용현동 165	임영준
10	" -74	"	89	72	성산동 80	이기용
11	" -129	답	57	68	"	"
12	" -131	"	477	68	"	이순호
13	" -135	대	15	72	대흥동 18-1	한정인
14	" -137	"	201	72	북가좌동 61-25	노병운
15	" -123	답	233	68	남가좌동 290-2	신정순
16	" -163	전	72	68	성산동 69	홍제락
17	" -133	답	643	68	" 80	이순호
18	" 131-5	전	275	68	연희동 133	최계봉
19	" 97-5	"	102	62	정능동 173-64	김연영
20	중동 371-1	대	116	72	성남시시흥동 179-19	박동철
21	" 355-1	"	86	72	중동 309	김도용
22	성산동 134-156	"	12	72	서울시	
23	" -122	구거	489	62	"	
24	" 96-5	학교 용지	657	64	"	
25	" 97-4	전	43	64	"	
계	25필지		4,509㎡			

건 발 조 서							
번호	지 번	구 조	총		소 용 자		비고
			진 평	거 속 진 평	주 소	성 명	
1	성산동 134-65	세면부락 조	1.11	1.11	서교동 332-20	김상철	
		정 육 개	0.44	0.44	"	"	
		(발 치) (번 소)					
2	" 134-70	연와조 (주) 세면와합	15	2	성산동 134-70	정계창	
3	중동 355	목조세면와합(주)	13.57	4	중동 355	김도용	
		부 러 조 스 레 트 합	46.37	13	"	"	
4	" 371	연와조 (주) 세면와합	18.68	18.68	남가좌동 313-14	조범준	
계	4 등			39.23			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80 호

관인개작사용 및 폐기승인공고

서울특별시 관인윤 아래와 같이
개작 사용 및 폐기함을 승인하고
관인규정 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관
인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1982. 2.15

서울특별시 장

1. 관인명 : 성북경찰서장인
2. 사용개시일자 : 82. 2.20
3. 관인위인명 : 별첨

인

영



공인명

성북경찰서장인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81 호

K-S 도시허가취소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
다음과 같이 K-S 표시 허가된 취소
처분하였기 등법시행규칙 제 21 조

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82. 2.15

서울특별시

허가번호 : 제 1457 호

허가일자 : 77. 5. 7

제조업체 : 한국전선공업(주)

소재지 :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 62-3

대표자 : 박 석 모

규격번호 : KSC 8305

품 명 : 배선용꽃음접속기

종류및등급 : 꽃음플러그 (코드부) 150V

13A 6A 10A 15A

취소사유 : 자진반납

취소일자 : 1982. 2.15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82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, 하수도)

신시제외공람공고

1. 서울시고시제 24 호 (75.2.4) 로
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강동구
 암사3동산 48-7 번지일대 명일국교
 진입로포장공사의 도시계획사업 (도
 로, 하수도) 실시인가를 득하기 위
 하여 도시계획법제 25 조 2 및 동법
 시행령제 26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
 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
 공한다.

2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
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
 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3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토목과와
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이
 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.

가. 공람장소 : 강동구청 (토목과, 건
 설관리과)

나. 공람기간 : 82.2.20 ~ 82.3.6
 (14 일간)

1982.2.

서울특별시

공 랑 계 요

1. 사업명 : 암사3동 명일국교진입로
 포장공사

2. 사업시행지 : 강동구암사산 48-7,
 산 48-5, 산 55-4, 명일동 305-6,
 312-116, 370-2, 암사동 420-26

3. 사업규모

가. 도로포장 : B=10-6 m L=220m
 A=15.3 a (콘크리트)

나. 하수도 : D=600 ㎜, L=220 m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(강동구
 청장)

5. 사업확수및준공예정일 : 인가일 -
 82.12.31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목
 소유권명세 : 별첨

7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 3
 항의 관계인의 주소 명명 : 별첨

8. 기타사항 : 의견및상세한 사항은 상
 기공람장소에 제출또는문의하기바람

토지세목 (도시계획사업구간내)

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거축토지 면적(㎡)	소 유 자		관 계 인	
	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알사동	산 48-7	임야	1,542	771	용산구갈월 동 7-43	최기생		
	산 48-5	·	59	19	종로구예지 동 6-7	장진환		
	산 55-4	·	7	2	·	·		
명일동	420-26	도로		191		서울시		
	305-6	대지	26	26	명일동 26-5	사회복지 법인에멘 재 단		
·	312-116	도로	3,998			서울시	종로구대평 로 1가 61번지	한국주택은행
계				1,200			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84 호

K·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

공업표준화법제 21 조 규정에 의거
K·S 표시 정지처분한바 있는 아래
사항에 대하여 등처분을 해제하였기
동법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준해
이를 공고한다.

1982. 2. 18

서울특별시장

허가번호 : 1482

업체명 : 삼공발산 (주)

소재지 :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1가 4

대표자 : 이 영 - 준





규격번호 : K.S.M 6674

품 명 : 방독면

종류, 등급 : 직결식 GM 374

처분일자 : 1981. 11. 16

해제일자 : 1982. 2. 15

<p>○ 관악구공고제 12 호</p> <p>관입계각사용공고</p> <p>당구관내 다음 등의 일반사무용 인 및 제인을 계각신조사용 승인 하고 구관인 제인을 동일자로 폐기 하였기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제 6 조</p>		<p>에 의거 공고함.</p> <p>1982.2.11</p> <p>관 악 구 청 장</p> <p>1. 대상동 : 신림제 5동, 신림제 7동 2. 사용계시 및 제인일시 : 1982.2.15 09:00 3. 관인의인영 : 별지</p>	
인			
영			
공인명	신림제 5동장직인및제인	신림제 7동장직인및제인	
<p>사 령</p> <p>○ 1982년 2월 15일자 명제 52 호</p> <p>지방화공기사보시보 김 천 수</p> <p>도시가스사업소 3호봉</p> <p>지방전기기원보시보 주 석 동</p> <p>민방공경보공계소 1호봉</p>		<p>○ 1982년 2월 12일자 명제 53 호</p> <p>종로구시민봉사실 아 상 수</p> <p>지방행정시기</p> <p>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건설을 명함.</p> <p>○ 1982년 2월 13일자 명제 54 호</p> <p>관악구기획감사과 최 금 배</p> <p>지방행정주사</p> <p>강 서 구</p>	

<p>통대문구위생과 지방행정서기</p> <p>도 부 구</p> <p>명제 55 호</p> <p>종합건설본부 지방건축기과</p> <p>유 정 영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에 의거 전직에 처함.</p> <p>통 작 구 지방건축기사</p> <p>송 주 봉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</p> <p>종합기술시험연구소 근무</p>	<p>통 대 문 구 지방건축기사</p> <p>강 명 수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.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</p> <p>마 포 구 지방건축기원</p> <p>문 정 수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.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.</p> <p>총 무 과 지방통신기사</p> <p>권 영 은</p> <p>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.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</p>
--	---

○ 1982 년 2 월 15 일자

명제 57 호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황성환	지 적 과 지방지적기사	중 로 구	지 적 기 사
계장원	" " "	강 남 구	지 방 지 적 기 사
황정오	주 택 기 획 과 " "	용 산 구	지 적 기 사
윤환구	중 로 구 지 적 기 사	도 봉 구	지 방 지 적 기 사
이재영	" " 지방지적기사	강 동 구	지 방 지 적 기 사
김희구	중 구 지 적 기 사	상 봉 구	"
문연송	" " 지방지적기사	통 대 문 구	"
안종우	용 산 구 지 적 기 사	강 남 구	"
정수원	" " 지방지적기사	강 동 구	"
박종구	성 동 구 지 적 기 사	마 포 구	"
박홍모	" " 지방지적기사	강 서 구	"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최강섭	동대문구지적기사	용산구	지적기사
장관진	지방지적기사	관악구	지방지적기사
유연홍	성북구지방지적기사	동대문구	지적기사
박진상	도봉구	성동구	.
김희영	.	종로구	.
최성식	은평구	서대문구	.
임동수	.	마포구	.
고한기	서대문구지적기사	강서구	지방지적기사
하영호	마포구지방지적기사	도봉구	지방지적기사
서희석	지적기사	영등포구	지적기사
성태용	강서구지방지적기사	구화정리과	지방지적기사
김덕희	.	은평구	.
윤승원	영등포구지적기사	지적과	.
조규은	관악구지방지적기사	.	.
김기환	.	중구	.
박시춘	강남구	주택계량과	.
김주복	.	은평구	.
도영희	강동구	주택기획과	.
유호	.	성북구	.
송인섭	구화정리과지방지적기사보	종로구	지방지적기사보
태재선	주택계량과	.	지적기사보
유정식	종로구지적기사보	성동구	지방지적기사보
김수부	지방지적기사보	도봉구	.
이상운	중구지적기사보	동대문구	지적기사보
김상기	지방지적기사보	강서구	지방지적기사보
임종욱	용산구	마포구	.
백순홍	지적기사보	영등포구	.
이분주	성동구지방지적기사보	성북구	.
이영재	동대문구지적기사보	마포구	지적기사보
임재훈	지방지적기사보	동작구	지방지적기사보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이병수	성북구	동대문구	지방지적기사보
추연호	·	영등포구	·
유연자	도봉구	종로구	·
김치현	·	성북구	·
김종혁	은평구	종로구	·
서인석	강서구	기획정리과	·
이선범	마포구	강서구	·
김홍국	·	영등포구	·
황운보	서대문구	은평구	·
고만기	영등포구	도봉구	·
박종수	·	서대문구	지적기사보
김영희	·	판악구	지방지적기사보
이남용	관악구	용산구	지적기사보
최택영	·	성북구	지적기사보
조길형	용산구	구로구	지방지적기사보
반영명	서대문구	영등포구	·
최운구	강남구	중구	·
차일호	·	용산구	·
송명근	·	용관악구	·
최종수	강동구	중구	지적기사보
박윤환	·	은평구	지방지적기사보
손병용	중구	관악구	지방지적기원
이종식	·	강동구	·
박상정	용산구	강서구	·
최재용	성동구	성북구	·
박용	·	도봉구	지적기원
이정분	동대문구	성북구	지방지적기원
김귀준	동성북구	도봉구	지적기원
강요원	·	강동구	지방지적기원
홍성열	도봉구	성동구	·

성명	발행사항			현부서	직급	
서봉식	도	봉	구	지 적 기 원	강 동 구	지 적 기 원
송규현	은	평	구	지 방 지 적 기 원	관 악 구	.
이북환	마	포	구	지 적 기 원	강 서 구	지 방 지 적 기 원
이창호	.	.	.	지 방 지 적 기 원	.	.
김용국	강	서	구	.	중 구	지 적 기 원
남영표	.	.	.	지 방 지 적 기 원	마 포 구	.
이병열	관	악	구	지 적 기 원	마 송 구	.
최기정	.	.	.	지 방 지 적 기 원	마 포 구	지 방 지 적 기 원
김길국	강	남	구	.	심 북 구	.
박경래	강	동	구	지 적 기 원	성 동 구	지 적 기 원
윤재한	은	평	구	지 방 지 적 기 원	강 남 구	지 방 지 적 기 원
강기환	구	로	구	.	중 구	.
박충제	영	동	구	지 적 기 원	마 포 구	.
이형원	동	작	구	지 방 지 적 기 원	은 평 구	.
안성길	중	로	구	지 적 기 원	동 매 문 구	지 적 기 원
장안기	중	.	구	지 방 지 적 기 원	강 남 구	지 방 지 적 기 원
박경락	서	대	구	지 적 기 원	강 용 구	.
성덕수	.	.	.	지 방 지 적 기 원	반 악 구	.
서찬규	구	회	과	.	강 동 구	.
위정열	중	로	구	지 방 지 적 기 원 보	성 동 구	지 방 지 적 기 원 보
박진수	동 매 문 구	.
예회동	성	동	구	.	중 로 구	.
김명학	영	동	구	.	.	.
김종신	중	로	구	.	강 남 구	.
김영자	영	동	구	.	영 동 구	.
최영운	영	동	구	.	중 구	.
박종국	서 매 문 구	.
서희봉	성	북	구	.	도 봉 구	.
홍상국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경규희	은평구 지방지적기원보	중구	지방지적기원보
최봉구	마포구	강남구	"
박동식	강서구	서대문구	"

명 제 58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김정서	의약과	성북구보건소	지방약무사
권오환	"	관악구	"
정기성	"	강동구	"
현석오	종로구보건소	의약과	"
강석철	중구보건소	"	"
박진전	용산구보건소	동대문구보건소	"
윤진규	성동구	의약과	"
정은모	동대문구	"	"
이찬영	성북구	중구보건소	"
서태영	도봉구	종로구보건소	"
이영웅	은평구	강남구	"
전창섭	서대문구	영등포구	"
이상현	마포구	동작구	"
신완효	강서구	구로구	"
윤대장	구로구	강서구	"
이건송	강남구	마포구	"
민경남	동대문구	서대문구	"
김준배	관악구	은평구	"
김광년	영등포구	의약과	"
배동수	강동구	용산구	"
박규용	종로구	"	지방약무사보
강철원	종로구	영등포구	"
김진수	강서구	종로구	"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조 태 현	영 등 포 구 보 건 소	동대문구보건소	지방약무사보
유 흥 식	동 대 문 구	강 서 구	"
박 동 환	강 남 구	도 봉 구	"
공 기 철	은 구	영 등 포 구	"
김 상 대	동 대 문 구	강 남 구	"

서울특별시

◎ 1982년 2월 13일자 령제 59호

서울시온령구수습행정관 김 상 법
행정사무관시보

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 1항 제 3호
의 규정에 의하여 유직을 명함.
공무원임용령 제 41조 제 5항의 규
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온령구 파견근
무를 면함.

총 무 처 장 관

◎ 1982년 2월 18일자 령제 61호

온령구환경과장 안 의 수
지방행정사무관

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(사건
81-324 82.1.22)에 의거 81.11.18
자 갑봉 3월처분을 무효로 함.

◎ 1982년 2월 20일자 령제 63호

부 지 과 박 증 회
지방행정사무관

성동구

부 지 과 김 진 경
지방행정사무관

부지과 의료보호계장

성동구새마을과 김 농 구
지방행정사무관

부지과 의료보호계장

서울특별시